

업 무 협 약 서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와 십대여성인권센터(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성평등 관련 문제를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젠더 감수성을 지닌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문화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해 상호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성화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지역사회의 십대 여성 인권 문제 해결 과정에 서울여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정보 교류 및 협력
2. 지역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와 AI의 젠더 편향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젠더 혁신가 양성 관련 사업 및 연구 협조
3. 양 기관이 개최하는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지원과 협조
4.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제3조(협력방법) 양 기관은 자료의 제공 및 교환, 교육, 자문, 연구 등의 방법으로 교류 협력 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상호이의가 없는 한 계속 지속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효력발생)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협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양 기관은 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에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6월 24일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소 장

이 선 희



십대여성인권센터

센 터 장

조 진 경

